

일본의 영유아 학대방지를 위한 입법적 동향

김수홍



지역법제 Issue Paper 16-16-⑥

일본의 영유아 학대방지를 위한 입법적 동향

김 수 홍

**일본의 영유아 학대방지를
위한 입법적 동향**
Legislative Issues on Child Abuse
Prevention in Japan

연구자 : 김수홍(부연구위원)
Kim, Suhong

2016. 11. 30.

목 차

제 1 장 서 론	5
제 2 장 일본의 영유아 학대방지 관련 법제의 의의	7
I. 일본 아동학대방지법에서 아동학대의 정의	7
II. 아동학대의 실태	8
제 3 장 일본의 영유아 학대방지 관련 법제	9
I. 2000년 아동학대방지법의 제정	9
II. 2004년 아동학대방지법의 개정	10
III. 2004년 아동복지법의 개정	10
IV. 2007년 아동학대방지법 및 아동복지법의 개정	12
1. 2007년 아동학대방지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 내용	13
2. 2007년 아동복지법의 개정 내용	15
V. 2011년 민법 및 아동복지법의 개정	16
제 4 장 일본의 영유아 학대방지 대책과 과제	21
I. 영유아 학대방지 대책	21
II. 영유아 학대방지의 과제	22
제 5 장 시사점	25
참 고 문 헌	27

제1장 서론

- 우리나라의 전국 아동보호전문기관을 통해 신고 접수된 아동학대 상담 건수는 늘어나는 추세인데, 2010년 9,199건에서 2014년 17,791건으로 5년 사이에 약 2배의 증가가 나타나고 있음.
 - 이 중에서 특히 주목할 점은 부모에 의한 아동학대가 8,027건 (81.8%)으로 학대행위자를 분석했을 때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우리나라의 아동학대(영유아)¹⁾에 대한 기존의 대응은 단편·일률적으로 아동학대행위자의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부모에 의한 학대행위나 방치 및 방임 등을 가정폭력처벌법상의 가정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의 대상으로만 취급해 왔음.
 - 2014년에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이 전환되어 새롭게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아동학대처벌법”이라 한다)이 제정되었음.
 - 아동학대처벌법은 학대로부터 피학대아동을 보호하면서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학대행위자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서 단순히 엄중한 처벌만이 아니라 다양하고 적합한 보호처분이 양립되어야 한다는 점에 기초하고 있음.
- 이와 관련하여 입법적 연혁에서는 다소 차이가 있지만, 아동학대에 대한 일본의 입법적 대응은 일본의 아동복지법과 일본의 아동학대방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아동학대방지법”이라 한다)이 제정되어 있다는 점에서 한국의 입법적 대응과 유사점을 가지고 있음.

1) 일본의 아동학대방지법 제2조에서 말하는 아동학대는 영유아 아동학대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아동과 영유아의 개념을 혼용해서 사용한다.

제1장 서론

- 따라서 일본의 아동학대방지법, 아동복지법, 민법 등의 아동학대방지법제와 과제를 검토하여 한국의 영유아 학대방지 관련 법제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제 2 장 일본의 영유아 학대방지 관련 법제의 의의

I. 일본 아동학대방지법에서 아동학대의 정의

- 일본 아동학대방지법에서는 아동을 때리고 차는 등의 신체적 폭행과 성적 폭행에 의한 것뿐만 아니라 심리적 학대와 방치 및 유기도 포함하는 것을 명확히 정의하고 있음.
- 아동학대방지법 제2조는 “이 법률에서 아동학대란 보호자(친권을 행하는 자, 미성년후견인 및 그 외의 자로서 현재 아동을 감호(監護)하는 자를 말한다)가 그 감호하는 아동(만 18세에 이르지 못한 자를 말한다)에 대하여 하는 다음과 같은 행위를 말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음.
- ① 아동의 신체에 외상이 발생하거나 생길 수 있는 폭행을 가하는 것, ②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하는 것(성폭행) 또는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는 것(성적착취), ③ 아동의 몸과 마음의 정상적 발달을 방해하는 굶기기(또는 매우 소량의 식사) 또는 장시간 방치, 보호자 이외의 동거인에 의한 전 2호 또는 다음 호에 해당하는 행위와 동종 행위의 방치 및 기타 보호자로서의 감호를 현저히 태만히 하는 것, ④ 아동에 대한 극심한 욕설 또는 극단적인 거부 대응, 아동이 동거하는 가정의 배우자에 대한 폭력의 신체에 대한 불법적 공격이 있어서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미칠 것 또는 이에 준하는 심신에 해로운 영향을 끼치는 언동을 말하며 기타 아동에 극심한 심리적 외상을 주는 언행을 하는 것 등의 4가지 유형을 규정하고 있음.

Ⅱ. 아동학대의 실태

- 일본의 아동학대 상담건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2005년에는 상담건수가 34,472건이었으나 2014년에는 2배 이상으로 증가한 88,931건이었음.
- 이러한 현상은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 인식 변화로 그동안 잠재되어 있던 학대사례를 발견하게 된 것이 하나의 요인이라고 할 수 있음.

[표] 일본 아동상담소의 아동학대 상담 대응 건수

연도	2005	2006	2007	201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건수	34,472	37,323	40,639	42,664	44,211	56,384	59,910	66,701	73,802	88,931

제 3 장 일본의 영유아 학대방지 관련 법제

I. 2000년 아동학대방지법의 제정

- 2000년 5월 17일 의원입법으로 아동학대방지법이 제정되었음.
 - 동법은 처음으로 신체적 학대, 심리적 학대, 성적학대, 보호의 태만을 포함한 아동학대의 정의를 규정하고(제2조), 아동학대의 내용이나 형태를 명확하게 하였음.
 - 아동의 학대를 금지하고(제3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아동의 신속하고 적절한 보호, 학대금지를 위한 필요한 체제의 정비 등의 책무를 다하고 있음(제4조).
 - 아동학대를 발견하기 쉬운 장소에 있는 학교의 교직원, 의사, 보건사, 변호사, 아동복지에 관련된 자에 조기발견의 노력의무를 다하고 있음(제6조).
 - 도도부현은 학대의 의심이 있는 경우에 거주지에 직원 등을 출입시키는 조사권, 질문권을 인정함(제9조).
 - 아동의 안전확인, 일시보호, 출입조사를 할 때 경찰관의 원조를 요구할 수 있음(10조).
 - 아동학대를 한 부모의 면회·통신을 제한함(제12조).
 - 학대·폭행 등의 범죄성을 명확하게 함(14조).
- 그러나 동법은 통고의무에 대해서 벌금을 과하거나 비밀의무가 있는 전문직의 통보가 의무위반이 되지 않도록 명확하게 규정하고, 선의의 오보에 대해서 면책규정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친권제한규정에 대해서도 신상감호권의 일부정지, 부분적 발탁 등 유연한 제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Ⅱ. 2004년 아동학대방지법의 개정

- 2004년 4월에 아동학대방지법의 일부개정을 하였음.
 - 아동학대의 정의에 대한 재검토가 이뤄지면서 학대·방치의 정의 중에 보호자 이외의 동거인도 보호자에 의한 학대방치의 유형으로 규정하였고, 배우자 간의 폭력도 아동학대의 정의에 포함하였음.
 - 국가 및 지방공공단체의 책무에 대한 규정을 개정하여 아동학대의 예방 및 조기발견으로 피해아동의 자립지원을 포함한 각 단계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가 있음을 명시하였음.
 - 즉 아동학대의 통고의무를 확대하고, 특히 아동상담소장 및 도도부현지사는 필요에 따라 적절하게 경찰의 원조를 요구해야 함.
 - 또한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시설입소 등의 조치를 하는 경우에도 아동과 면담·통신을 제한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음.
 - 이외에도 아동학대를 받아 학업에 뒤쳐진 아동에 대한 시책, 진학·취직할 때의 지원에 대해서도 규정하였음.

Ⅲ. 2004년 아동복지법의 개정

- 2004년 11월 아동복지법이 일부개정 되었고, 아동학대 방지대책 등의 강화를 위해서 ① 아동상담소의 역할의 충실화, ② 아동복지시설·수양부모제도, ③ 요보호아동에 관련된 조치에 관한 사법적 관여의 재검토 등을 도모하고 있음.

- 아동상담소의 역할의 충실화에 대해서는 아동상담에 관한 시정촌이 담당하는 역할을 법률상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과 함께 아동상담소의 요보호성이 높은 사례의 대응이나 시정촌에 있어서 후방지원을 증점화하며, 지방공공단체에 요보호아동대책지역협의회를 설치하는 것과 함께 협의회참가자의 비밀의무, 지원내용을 일원적으로 파악하는 기관의 선정 등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규정을 정비하고 정령으로 정한 시(市)에는 아동상담소를 설치할 수 있게 하였음.
 - 아동복지시설·수양부모제도에 대해서는 유아원 및 아동양호시설의 입소아동에 관한 연령요건을 재검토하고(유아원은 2세 미만부터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양호시설도 1세 미만을 대상으로 함), 아동의 감호(監護)·교육·징계에 관한 수양자부모의 권한을 명확히 하며, 아동복지시설 및 아동자립생활원조사업(자립원조 홈)의 업무로 퇴소한 아동에 관한 상담, 그 밖의 원조 등을 규정하였음.
 - 요보호아동에 관련된 조치에 관한 사법적 관여의 재검토에 대해서는 가정재판소의 승인을 얻어 아동복지시설의 입소조치에 대해서 2년간이라는 기간을 두고, 갱신에 대해서도 그 필요성을 가정재판소에 검토하게 하여 유기한(有期限)으로 할 것, 아동의 보호자에 대해서 아동상담소가 하는 지도조치에 대해서 가정재판소가 관여하는 체계를 도입할 것, 아동상담소장의 친권상실 선고청구권을 18세 이상의 미성년자로 확대할 것 등을 규정하였음.
- 이러한 개정 아동복지법의 전면 시행에 따라 2005년 2월부터 3월에 걸쳐 시정촌아동가정상담원조지침의 책정, 아동상담소운영

지침의 개정, 요보호아동대책지역협의회설치·운영지침의 책정, 아동학대대응 매뉴얼의 개정을 실시하였음.

- 2005년 4월에는 요보호아동과 그 가정에 대해서 보다 양호한 지원을 위한 평가와 자립지원계획의 책정지침을 정리하여 아동자립지원계획가이드라인을 작성하고, 요보호아동에 관한 원조관계자에게 적극적인 활동을 촉구하였음. 또한 학교에 있어서 아동학대의 조기발견·조기대응체제의 충실을 도모하기 위해 2005년도부터 학교 등에 있어서 아동학대방지에 관한 국내외의 선진적 체계에 대해서 조사연구를 실시하였음.

IV. 2007년 아동학대방지법 및 아동복지법의 개정

- 2007년 5월에 아동복지방지대책의 강화를 도모하는 관점에서 아동학대방지법 및 아동복지법의 일부개정으로 아동의 안전확인 등을 위한 출입조사 등의 강화, 보호자에 대한 면회·통신 등의 제한의 강화 등이 재검토되었음.
- 아동의 안전확인 등을 위한 출입조사의 강화에 대해서 아동상담소장 등은 학대통고를 받았을 때 신속하게 안전확인을 위한 조치를 취하며, 시정촌장은 출입검사 또는 일시보호의 실시가 적당하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그 취지를 아동상담소장 등에 통지하고 아동학대의 위험이 있는 보호자에 대하여 도도부현지사에 의한 출두요구를 제도화함. 또한 도도부현지사가 출입검사를 실시하고 거듭 출두요구를 하여도 보호자가 이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재판관의 허가장을 얻은 후에 출입검사가 가능하도록

하고, 출입검사를 거부한 자에 대해서 벌금을 30만엔 이하에서 50만엔 이하로 하였음.

- 보호자에 대한 면회·통신의 제한의 강화에 대해서 일시보호 및 보호자의 동의에 의한 시설입소 등의 경우에는 아동상담소장이 보호자에 대한 면회·통신의 제한을 할 수 있도록 하였고, 가정재판소의 승인을 얻어 강제적으로 시설입소 등의 조치를 취한 경우에도 필요에 따라 도도부현지사는 보호자에 대해서 아동의 따라다니거나 아동의 거주지 근처를 배회하는 것을 금지하였으며 해당 금지명령을 위반하는 경우에 벌칙을 정하였음.
- 보호자에 대한 지도에 따르지 않는 경우의 조치를 명확히 함으로써 아동학대를 한 보호자에 대한 지도에 관련된 도도부현지사의 권고를 따르지 않는 경우에는 일시보호, 시설입소조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였고, 시설입소 등의 조치를 해제하는 경우에는 보호자에 대한 지도의 효과 등을 감안하는 것으로 하였음.
- 법률의 목적에 ‘아동의 권리이익을 옹호에 이바지할 것’을 명시하였으며, 국가 및 지방공공단체는 중대한 아동학대사례의 분석을 실시하고 지방공공단체는 요보호아동대책지역협의회의 설치에 노력할 것 등의 규정을 포함하였음.

1. 2007년 아동학대방지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 내용

(1) 법률 목적

- 법률 목적으로 아동학대의 방지 등에 관한 시책의 촉진과 함께 아동의 권리이익 옹호에 공헌한다는 내용이 추가되었음.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국가 및 지방공공단체의 책무로 아동학대를 받은 사례분석이 추가되었음.
- 일본은 2004년부터 학대로 인해 죽음에 이른 사례 등 중대사안에 대한 검토를 실시하였으나 이번 개정은 이것을 유념하여 규정한 것이며 동시에 새롭게 지방공공단체에게도 아동학대에 대한 책무를 요구한 것임.

(3) 안전확인 의무화

- 아동상담소 등이 아동학대에 관련하여 통보를 받았을 때에 ‘아동의 안전 확보에 노력한다’고 되어 있었던 부분을 ‘아동의 안전 확인을 위해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한다’로 보다 더 강한 대응을 하였음.

(4) 보호자에 대한 출두요구와 현장출입조사 권한 강화

- 지사(知事)는 보호자에게 출두요구를 할 수 있는데 보호자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현장출입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강화할 수 있게 되었음.
- 보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할 경우 재출두요구를 하고 보호자가 거듭하여 거부하는 경우 재판소의 허가장을 받아 아동상담소의 직원 등이 거쳐하고 있는 곳을 현장출입조사하여 아동에 대해 수색이 가능하도록 되었음.
- 상담소가 현장출입조사를 실시하려고 해도 보호자가 자물쇠를 채우는 등 조사를 거부할 시 강제적으로 현장검사를 할 수 없었으나 이번 개정은 현장출입조사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

(5) 보호자에 대한 지도권한 강화

- 학대를 가한 보호자에 대해 지도권고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 일시보호, 강제입소조치, 그 외의 필요한 조치를 강화할 수 있게 되었고, 필요에 따라서는 친권분실선언 청구가 가능해졌음.
- 시설입소 등 조치를 해제할 시에 아동상담소는 보호자의 지도효과, 학대 재발예방 효과 등을 감안해야 하고, 보호자가 지도를 받는 것을 권장하는 동시에 아동의 안전과 복지를 도모하고자 함.

(6) 보호된 아동에 대한 면회와 통신제한과 접근금지 명령

- 강제입소조치뿐만 아니라 동의입소에 대해서도 면회와 통신의 제한이 가능하게 되었고, 동시에 강제입소조치의 경우 보호자에게 아동 접근명령을 지시하고 명령을 위반할 경우 벌칙을 가할 수 있게 되었음.

2. 2007년 아동복지법의 개정 내용

(1) 지방공공단체의 기능 강화

- 요보호아동대책지역협의회의 설치에 대해서 지방공공단체는 ‘둘 수 있다’라는 부분이 2007년 개정을 통해 ‘둘 수 있도록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보다 강하게 설치를 요청하는 규정으로 개정되었으며 지방공공단체 간에 아동학대와 관련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함.

(2) 아동상담소장에 의한 친권대행

- 아동상담소장은 미성년후견인 선임 청구가 된 아동 등에 대해서 친권을 행하는 자 혹은 미성년후견인이 선임되기까지의 기간 동

안 친권을 이행하는 자로 규정되었음. 그동안 민법에서는 미성년 후견인이 자연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동상담소장이 소장직을 물러나게 되면 아동에 대한 책임, 의무, 권한을 행하는 입장이 되지 않는 등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많았음.

- 그러나 2007년 개정에서는 아동상담소 소장이 공직으로서의 아동 등에 관한 친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한 것임.

(3) 벌 칙

- 정당한 이유 없이 현장출입조사를 거부한 자(보호자)에 대해서는 벌금 30만엔 이하에서 50만엔 이하로 벌금을 인상함.

V. 2011년 민법 및 아동복지법의 개정

- 아동학대의 방지를 도모하고, 아동의 권리보호의 관점에서 친권 정지제도를 신설하며 법인 또는 복수의 미성년후견인의 선임을 가능하도록 민법의 일부를 개정함에 따라 가사심판법이나 호적법 등 필요한 개정을 실시하였음. 또한 수양부모에게 위탁중인 친권자가 없는 아동의 친권을 아동상담소장이 행사하는 것 등의 조치를 강구하기 위해서 아동복지법이 개정되었음.
- 친권정지제도가 신설되었음.
 - 지금까지는 친권상실, 관리권상실의 각 제도는 존재(민법 제834조, 제835조)하였으나 사전에 친권을 제한하도록 하는 탄력적인 제도는 두고 있지 않았음.
 - 2011년 민법 개정에는 친권상실, 관리권상실제도에 추가하여 2년 이내의 기간에 한하여 친권을 행사할 수 없게 하는 친권정지제도를 신설하였음.

- 친권정지제도에 대해서 친권의 일시정지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고, 이에 정지기간에 대해서는 2년을 넘지 않는 범위로 하여 아동복지법 제28조에 2년이라는 기간을 설정했음.
- 친권의 상실 등의 청구권자의 재검토를 도모하였음.
 - 지금까지는 친권의 상실 등에 대해서 가정재판소에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자(子)의 친족 또는 검찰관으로 되어 있었음(민법 제 834조).
 - 그러나 2011년 민법의 개정에서 자(子)의 친족, 검찰관 이외에 자(子) 본인, 미성년후견인 및 미성년후견인 감독인도 친권상실 등에 대해서 청구권을 가지는 것으로 하였음.
- 시설장(施設長) 등의 권한과 친권과의 관계에 대한 규정을 두었음.
 - 지금까지 아동복지법은 시설장 등에 대해 아동의 감호 등과 관련된 복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규정을 하지 않았음.
 - 그러나 아동복지법의 개정으로 시설장 등이 아동의 감호 등에 관하여 그 복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는 경우에는 조치를 부당하게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친권자는 부당한 주장이나 방해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였음.
 - 친권자에 의한 자(子)의 인도나 부당한 간섭의 제한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고 15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시설장(施設長)이 입양하는 경우에는 도도부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시설장(施設長)은 아동의 생명신체의 안전을 위해서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는 친권자 등의 의사에 반해도 필요한 조치를 취

할 수 있음. 그러나 이 경우에는 해당조치에 대해서 신속하게 도도부현 또는 시정촌에 보고해야 함.

- 미성년후견제도 등의 재검토가 이뤄졌음.
 - 지금까지 미성년후견인은 개인으로 1인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었음(민법 제842조).
 - 그러나 법인후견이나 복수후견도 가능하도록 개정되어 성년후견과 같이 조직적인 미성년후견이나 타 직종의 연계에 의한 복수후견의 인정을 통해 후견제도를 다양화함.
- 지금까지 아동복지법에서는 시설입소중의 아동에 대해서 친권자 등이 없는 경우에 시설장이 친권을 대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지만, 수양부모에게 위탁중이나 일시보호중의 친권자 등이 없는 아동에 대해서는 친권을 대행하는 자가 없었음.
 - 2011년 개정 아동복지법에서는 수양부모에게 위탁중이나 일시보호중의 친권자 등이 없는 아동에 대해서는 아동상담소장이 친권을 대행하는 것으로 하고, 아동상담소장은 15세 미만 미성년자의 입양을 대락(代諾)을 하는 경우에는 도도부현지사의 허가가 필요한 것으로 함.
 - 일시보호중에 아동상담소장은 친권자나 미성년후견인이 있어도 감호, 교육, 징계에 대해서는 아동의 복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고, 친권자·미성년자후견인은 부당하게 이것을 방해해서는 안 됨.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을 때에는 친권자 등의 의사에 반해도 아동상담소장은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으로 함.

- 친권자나 미성년자후견인의 의사에 반해 2개월을 경과하여 일시 보호를 하는 경우에는 도도부현지사가 도도부현아동복지심의회의 의견을 듣지 않으면 안 되며, 조치입소의 승인의 청구나 친권 상실, 친권정지의 심판의 청구가 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자(子)의 감호 및 교육의 권리의무는 자(子)의 이익이라는 목적을 위해서 하는 것임을 명확하게 하였음.
- 다시 말해서 친권의 효력에 있어서 감호·교육의 친권의무에 있어서는 ‘자(子)의 이익을 위하는 것’으로 명확히 규정하였고, 징계에 대해서도 징계장(懲戒場)에 관한 부분을 삭제하였음(민법 제822조).
- 15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양자로 입양하는 것에 대해서 친권이 정지된 부모에게도 대락(代諾)을 하는 경우에는 친권이 정지된 부모의 동의가 필요함.

[표] 아동학대방지법 제·개정의 주요내용2)

내용	2000년 법 제정	2004년 법 개정	2007년 법 개정
목적(제1조)	아동학대 금지 및 방지	아동학대의 예방 및 조기발견을 추가	아동의 권리 옹호를 추가
아동학대의 정의(제2조)	신체적 학대, 성적 학대, 심리적 학대, 유기 및 방임	(신체적 학대로서) 동거인에 의한 학대 방지, (심리적 학대로서) 배우자간의 가정내 폭력을 추가	-

2) 배상균, 일본의 아동학대방지 대응에 관한 검토 - 일본 후생노동성의 ‘아동학대 대응 매뉴얼’을 중심으로-, 소년보호연구 제28권 제4호, 2015, 68쪽 이하.

제 3 장 일본의 영유아 학대방지 관련 법제

내용	2000년 법 제정	2004년 법 개정	2007년 법 개정
아동학대 신고대상(제6조)	학대를 받은 아동	학대를 받았다고 생각되는 아동	-
아동학대 신고처(제6조)	아동상담소	지방자치단체를 추가	-
아동의 안전 확인(제8조)	안전 확인에 노력할 것	관계자와 협력 하에 안전 확인에 노력할 것	안전 확인조치를 강구할 것
출두요구(제8조의2)	-	-	광역단체장이 출두의 필요성을 인정할 경우
임시검사 및 수색(제9조의3)	-	-	출두요구에 응하지 않은 경우 법원의 허가를 얻어 강제 출입수색 가능
경찰에 대한 원조요청(제10조)	경찰관에 대한 원조요청	경찰서장에 대한 원조요청	-
면회 및 통신의 제한(제12조)	강제입소 아동에 대한 면회 및 통신제한	-	일시보호 아동에 대해서도 면회 및 통신제한이 가능
형사벌(제17조)	아동복지법 준용	-	아동복지사의 질문 등을 거절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제 4 장 일본의 영유아 학대방지 대책과 과제

I. 영유아 학대방지 대책

- 유아가정전호방문사업(乳兒家庭全戶訪問事業)의 실시
 - 일본정부는 모든 유아가 있는 가정을 방문하여 양육의 고립화를 방지하고, 지원이 필요한 가정에 대한 적절한 서비스나 정보제공을 하며 지역 속에서 아동이 건강하게 자라는 환경정비와 지원에 이어지도록 유아가정전호방문사업을 실시하고, 학대의 발생예방이나 조기발견·조기대응에도 활용하려고 하고 있음.
- 학대 체크리스트나 매뉴얼의 작성·배포
 - 양육의 방치의 사례가 많아지고 피해를 받고 있는 0~5세의 영유아가 많기 때문에 일본정부는 영유아진단을 받지 않는 가정을 학대 예비군으로 보고 보건소의 보건사에게 가정방문이나 상담을 받고 있음.
- 양육지원방문사업의 대처
 - 양육에 관한 상담, 육아의 지원 등을 하는 양육지원방문사업도 아동학대의 예방, 조기발견, 조기대응에 효과가 있음.
 - 이 사업에 종사하는 조산사 등은 보고서를 작성하고 사례를 관리하는 기관이 상황을 파악하며 정기적으로 평가를 실시하고 지원내용이나 계획을 재검토함.

Ⅱ. 영유아 학대방지의 과제

- 아동학대의 발생이나 심각화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임신·출산기를 포함해서 조기에 상담·지원체계의 확립하는 것이 바람직함.
 - 원하지 않는 임신에 대해서 상담할 수 있는 체제와 경제적인 지원제도, 수양부모·양자제도에 대해서 주지하도록 하고, 관계기관의 연계체계의 정비, 임신기부터의 양육지원을 필요로 하는 가정의 연계체계의 정비 촉진을 들 수 있음.
 - 또한 양육지원을 필요로 하는 가정의 객관적인 파악, 조기부터 충실한 지원을 가능하기 위해 보건기관(모자보건담당부서 등)의 질의 향상과 체계의 정비, 양육방문사업의 충실화와 양육방문사업의 활용에 의한 임신·출산에 대한 조기부터의 지원체계의 정비 등을 들 수 있음.
- 아동학대의 조기발견·조기대응과 향후의 대처에 대해서는 ① 아동상담소의 상담체계의 충실, 시정촌의 아동복지담당부서 및 모자보건담당부서 등의 지원, 아동상담소의 직원의 전문성이나 질의 확보와 학대대응 중핵기관으로서의 조직체계의 정비, 상담에 관련된 직원 등의 연수강화, ② 아동학대에 대한 광고·계몽활동의 충실, 보육원·학교 등의 양육기관·교육기관에 소속되지 않은 가정의 고립화의 방지와 상담이나 지원에 이어지는 체계의 정비, 양육자의 효과적인 지도방법에 대해서는 지식의 수집, 기법의 발견 및 보급, ③ 아동상담소에 있어서 조치해제 시의 판단할 때 평가의 향상과 조치해제 후의 가정복귀할 때의 지원체계의 정비 등을 들 수 있음.

- 요보호아동대책지역협의회(아동을 지키는 지역 네트워크)의 활용 촉진과 관리기능의 강화,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검증내용의 분석과 검증의 제언에 관련된 대처에 대한 평가의 실시·확인이 필요함.
- 특히 요보호아동대책지역협의회의 관계기관의 정보공유와 행동연계에 대한 실질적인 역할이 중요함.

제 5 장 시사점

- 일본은 아동학대방지법이 제정된 후 개정을 통해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다양한 제도를 도입 및 시행하고 있음.
 - 일본의 아동학대 방지에 대한 대응은 기본적으로 사전예방으로써 발생예방·조기발견·조기대응을 통한 보호지원과 이를 위한 관계기관의 연계로 되어 있음.
 - 이를 위해 아동학대의 정의를 폭넓게 인정하고 아동학대 대응을 통해 인식을 확산시키고 있으며, 아동학대 대응 매뉴얼 등을 발간하여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사항에 대해서도 설명함으로써 인식을 확산시키고 있음.
 - 이러한 대응은 매년 증가추세에 있는 아동학대 상담건수를 기존에 없었던 학대가 새롭게 발생한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인지범위가 협소했음을 인정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일본의 경우 아동학대 방지를 위해서 아동학대를 위한 체계, 아동학대·방치의 조기발견·조기대응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문제의 해결의 신속성·자립지원 등 단계별로 다양한 관련기관의 역할분담과 연계를 하고 있음. 또한 예방이나 계몽활동을 통해 아동학대 가정의 지원·돌봄, 아동상담이나 보건복지·생활상담 등으로 수집한 정보를 집약하면서 사례관리를 체계화, 정보공유의 일원화 등을 추진하고 있음.
- 그러나 우리나라의 아동학대 방지에 대한 대응은 아동학대에 대한 형사규제에 따르는 경향이 있음.

- 특히 아동학대로 인해 보호자에게 형사처벌을 가할 경우 가정이 붕괴되고 부모자식관계가 회복되기는 어렵다는 점에서 법제도의 개선이 필요함.
- 따라서 일본의 아동학대 방지에 대한 대응을 참고하여 아동학대 처벌법에서 아동학대범죄의 개념을 명확히 규정하고, 피학대아동을 위한 전문기관과 전문인력의 확충하는 등 사전예방으로써 학대방지를 위한 유기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관련 법제도의 개선이 필요함.

참 고 문 헌

- 배상균, 일본의 아동학대방지 대응에 관한 검토 - 일본 후생노동성의 ‘아동학대 대응 매뉴얼’을 중심으로 -, 소년보호연구 제28권 제4호, 2016.
- 백경희, 아동학대에 대한 친권제한의 실효적 적용에 관한 고찰 - 일본의 아동학대 방지 관련 법제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 부산대학교 법학연구 제37집 제2호(통권88호), 2016.
- 이은주, 아동학대의 현황과 쟁점, 월간 복지동향 192호, 2014. 10.
- 이호중, 학대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한 법체계의 개선방향, 저스티스 제134호, 2013.
- 원혜옥, 아동학대의 개념 및 실효적인 대책에 관한 검토 -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중심으로 -, 인하대학교 법학연구 제18권 제4호, 2015.
- 정현수, 일본의 개정 親權法에 관한 小考, 법학연구 제37집, 2012.
- 최진희, 일본 아동학대방지대책 강화에 관한 내용 및 논의 - 2007년 개정 내용을 중심으로 -, 국제사회보장동향, 2007.
- 加藤智章=菊地馨実=倉田聡=前田雅子 『社会保障法 [第6版]』 (有斐閣、2015年)
- 岩井宜子「児童虐待防止法制の現状と課題」犯罪と非行第175号 (2013年)
- 棚村政行「児童虐待の防止に向けた取組みと今後の課題」早稲田大学社会安全政策研究所紀要 第4号 (2011年)
- 中村由紀子 「医学的観点から見た児童虐待防止への対応：現状と課題」犯罪と非行第175号 (2013年)

참 고 문 헌

厚生労働省「子ども虐待対応の手引き」(厚生労働省、2005年)

厚生労働省「子ども虐待対応の手引き」(厚生労働省、2009年)

厚生労働省「子ども虐待対応の手引き」(厚生労働省、2013年)